



# 청구신청내역 상세

홈    청구/소통    신청내역조회    청구신청내역    **청구신청내역 상세**    ▼

|       |       |         |          |       |     |      |
|-------|-------|---------|----------|-------|-----|------|
| 접수 대기 | 접수 완료 | 처리부서 지정 | 부서처리자 지정 | 결정입력중 | 결재중 | 공개완료 |
|-------|-------|---------|----------|-------|-----|------|

## 정보(비공개) 결정통지서

이전

다음

목록

### 청구정보 및 공개자료

|       |   |      |            |        |
|-------|---|------|------------|--------|
| 수신자   | [수신자] (52946) 경상남도 고성군 [redacted]   |      |            | 주제별    |
| 접수번호  | 10514828  | 접수일자 | 2023.03.16 | 공개정보   |
| 처리기관  | 고성군   | 통지일자 | 2023.04.12 | 청구/소통  |
| 청구내용  | 행정감기<br>2022년도<br>청구1] 2018년 부터 2022까지 사업계획서를 공개바랍니다.<br>2청구2]정산시 제출받은 ㄱ.통장사본 ㄴ.회계장부 ㄷ.지출결의서 ㄹ.영수증 ㄹ.체주 등 을 공개 바랍니다공개바랍니다   |      |            | 정보공개란? |
| 비공개내용 | 아래 청구인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불임과 같이 결정 통지하고자 합니다.<br><br>1. 청구인: 조홍래<br>2. 접수번호: 10514828<br>3. 청구정보: 장애우 목욕탕에 대한 정보공개 요청<br>4. 검토결과<br>【청구1】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사업계획서 공개청구<br>【검토결과】 비공개<br>【청구2】 정산시 제출받은 ㄱ.통장사본 ㄴ.회계장부 ㄷ.지출결의서 ㄹ.영수증 ㄹ.체주 등 공개청구<br>【검토결과】 비공개<br>【비공개사유】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(비공개대상정보)제 ①항의 7」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·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의거하여 비공개 합니다.<br><br>불임 1. 결정통지서 1부.<br>2. 제3자 의견서 1부. 끝. |      |            | 정보공개체험 |

· 공개자료 확장자가 csd인 경우는, csd뷰어를 설치하시기 바랍니다.

[뷰어설치](#)

### 처리기관 정보

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|
| 처리과명 | 복지지원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|
| 처리자  | 문성숙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직위/직급 | 지방사회복지서기 |
| 주소   | 52935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성내리 198 고성군청 행정과 |       |          |
| 전화번호 | 055-670-2624                        | 팩스번호  | 02--     |
| 전자우편 | [redacted]@ea.kr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|

5-1

결재 정보

|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|
|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|
| 결재 요청일자 | 2023.04.12  | 결재 일자 | 2023.04.12 |
| 기안자     | 문성숙         | 직위/직급 | 주무관        |
| 검토자     | 김난아         | 직위/직급 | 장애인복지담당    |
| 협조자     |             | 직위/직급 |            |
| 전결자     | 오은겸         | 직위/직급 | 복지지원과장     |
| 대결자     |             | 직위/직급 |            |
| 결재권자    |             | 직위/직급 |            |
| 문서번호    | 복지지원과-15156 |       |            |



유의사항

- 정보공개 장소에 오실 때에는 이 통지서를 지참하셔야 하며, 청구인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증명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.
    - 가.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하는 경우: 청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(주민등록증 등)
    - 나.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: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
    - 다.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하는 경우: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별지 제8호 서식의 정보공개위임장과 청구인의 수임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
  - 수수료는 다음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내실 수 있으며,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내실 수 있습니다.
    - 가.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·전자결제 등
    - 나. 수입인지(정부기관) 또는 수입증지(지방자치단체)
  - 우송의 방법으로 공개가 가능하다고 통지된 정보를 우편 등으로 받으시려는 경우에는 앞에서 적힌 납부일까지 우송료를 현금 또는 우표 등을 공공기관에 보내야 합니다. 마이페이지
  -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18조 및 같은 법시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. 주제별  
공개정보
  -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(서면 또는 온라인: [www.simpan.go.kr](http://www.simpan.go.kr)) 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 청구/소통
  - 청구인이 통지된 정보의 공개일 후 10일이 지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정보의 공개에 응하지 않았을 때에는 이를 내부적으로 종결 처리할 수 있습니다. 정보공개란?
  - 이 통지서를 정보공개시스템을 이용하여 통지하는 경우에는 직인을 생략할 수 있으며, 청구인은 필요한 경우 직인 날인에 관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 정보공개체험
- 정보공개법 제 18조 제 1항에 의해 공개결정 되어진 내용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이 불가합니다.

해당 기관의 정보공개 업무처리에 대해 만족하십니까?

|        |  |
|--------|--|
| 만족도 평가 | <input type="radio"/> 1 <input type="radio"/> 2 <input type="radio"/> 3 <input type="radio"/> 4 <input type="radio"/> 5  |
| 의견 남기기 | 공무원들이 간접보조사업자에게 발목이 잡혔나요, 아님 접대를 받았나요 지방비로 보조금을 교부해 주고 집행 내용등을 공개해 법인의 영업상 비밀을 운운하는데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어구만. 봐 주기 정산검사를 했던지 뇌물을 받아 묵었는지 조홍래<br>· 의견은 4000byte(약 2000자) 이내로 작성 가능합니다.<br>· 등록된 정보는 수정 불가합니다. |

[개인정보처리방침](#)

[저작권보호정책](#)

[뷰어다운로드](#)

[찾아오시는길](#)

[관련 기관정보](#)

[이동](#)

대한민국정보공개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(어진동)  
 이용문의 : 1588-2572 (월~금 09:00~18:00, 공휴일 제외)  
 대표메일 : [openinfo@korea.kr](mailto:openinfo@korea.kr)



**1588-2572**

COPYRIGHT © MOIS. SOME RIGHTS RESERVED.

52



###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(약칭: 정보공개법)

[시행 2021. 12. 23.] [법률 제17690호, 2020. 12. 22., 일부개정]

행정안전부 (정보공개과) 044-205-2265

**제1조(목적)**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·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(國政)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.

[전문개정 2013. 8. 6.]

**제6조의2(정보공개 담당자의 의무)**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담당자(정보공개 청구 대상 정보와 관련된 업무 담당자를 포함한다)는 정보공개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, 공개 여부의 자의적인 결정, 고의적인 처리 지연 또는 위법한 공개 거부 및 회피 등 부당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[본조신설 2020. 12. 22.]

**제11조(정보공개 여부의 결정)** ① 공공기관은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청구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

② 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(起算)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.

③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, **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.** ★★★★★

④ 공공기관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·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소관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,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.

⑤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다.<신설 2020. 12. 22.>

1. 공개 청구된 정보가 공공기관이 보유·관리하지 아니하는 정보인 경우
2. 공개 청구의 내용이 진정·질의 등으로 이 법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로 보기 어려운 경우

[전문개정 2013. 8. 6.]



# 고 성 군

스시자 조홍래 귀하 (우 52946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동외로47번길 12 주공@ 103  
(경유)

**제 목 공개 여부 결정기간 연장 통지서**

|                   |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|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
| <p>정보 내용</p>      | <p>[장애우 목욕탕(명칭 다를 수 있음)]<br/>행정감기<br/>2022년도<br/>청구1] 2018년 부터 2022까지 사업계획서를 공개바랍니다.<br/>2청구2]정산시 제출받은 ㄱ.통장사본 ㄴ.회계장부 ㄷ.지출결의서 ㄹ.영수증 ㄹ.채주<br/>체주<br/>등 을 공개 바랍니다공개바랍니다</p>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
| <p>접수일 및 접수번호</p> | <p>접 수 일 : 2023. 03. 16.<br/>접수번호 : 10514828</p>   | <p>당초 결정기간</p> | <p>2023. 03. 29.</p> |
| <p>연장 사유</p>      | <p>1.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.<br/><br/>2.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와 관련하여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제2항 및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7조에 따라 정보공개 여부 결정을 위한 처리기한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을 알려드립니다.<br/><br/>가. 접수번호: 10514828<br/>나. 청구내용<br/>1)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장애인 목욕탕 사업계획서<br/>2) 정산시 제출받은 ㄱ.통장사본 ㄴ.회계장부 ㄷ.지출결의서 ㄹ.영수증 ㄹ.채주<br/><br/>다. 연장기한: 당초 2023. 03. 29. → 변경 2023. 04. 12.<br/><br/>붙임 기간연장결정 통지서 1부. 끝.</p>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
| <p>연장 결정기간</p>    | <p>2023. 04. 12.</p>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
| <p>그 밖의 안내사항</p>  |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

5-4

